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3
----------	----

발의년월일 : 2010. 10. 15  
제안자 : 전 원 기 의원  
(찬성자 7인)

## □ 제안이유

- 차량 등록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요율을 조정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인근 시·도의 리스차량의 등록을 우리 시로 유도하여 지방세 세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
- 지방세법에 의거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인하여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를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려 하는 것임.

## □ 주요내용

- 승용차 신규등록 시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채권매입요율 조정  
가. 배기량 1,600cc이상 2,000cc미만은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8에서 100분의 6으로 하고  
나. 배기량 2,000cc 이상은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2에서 100분의 6으로 함.(안 별표1의 제1호 가목)
-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10조와 관련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대상에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인한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를 신설함.(안 별표 2의 제2호 타목)

## □ 참고사항

- 현행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 및 매입면제대상(별표1,2)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상단 “[별표 1](제9조 관련)”을 “[별표 1]”로 하고, 제목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을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제9조제2항 관련)”으로 하며,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매입대상	매입기준	비고
① 1,000cc이상	등록세 과표의 6/100	
② 1,600cc이상	등록세 과표의 6/100	
③ 2,000cc이상	등록세 과표의 6/100	

별표2의 제2호(매입면제대상)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개수·건조·수선하는 경우와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등록, 인·허가. (「지방세법」 제108조 적용대상에 한함) 및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 등과 동일한 자동차 등으로 교환 받는 자동차의 등록(「지방세법」 제268조 적용대상에 한함)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채 매입.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사항

[별표 1] (제9조 관련)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비 고
<b>1. 자동차 신규등록</b>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이상	등록세과표의 6/100	
② 1,600cc이상	등록세과표의 8/100	
③ 2,000cc이상	등록세과표의 12/100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등록세과표의 3/100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등록세과표의 3/100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cc이상	등록세과표의 2/100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등록세과표의 1/100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등록세과표의 1/100	
<b>2. 자동차 이전등록</b> (시·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이상	등록세과표의 3/100	
② 1,600cc이상	등록세과표의 4/100	
③ 2,000cc이상	등록세과표의 6/100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등록세과표의 1.5/100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등록세과표의 1.5/100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cc이상	등록세과표의 1/100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등록세과표의 0.5/100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등록세과표의 0.5/100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비 고
<p>3. 각종 허가</p> <p>가. 도로·하천(소하천포함)·구거부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p> <p>나. 토지형질 변경허가 ① 농지(전·답) ② 산·임야, 잡종지등 기타지목</p> <p>다. 골프장 등록</p> <p>4. 건설공사도급계약(「건설산업 기본법」),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 (자치단체가 전액출자·출연법인의 계약 체결 포함)</p>	<p>점·사용료부과액의 5/100 (점·사용 기간이 1년이상의 장기허 가시는 최초 점·사용료 징수시에만 점·사용료 부과액의 5/100에 해당하 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함)</p> <p>m<sup>2</sup>당 1,500원 m<sup>2</sup>당 3,000원 m<sup>2</sup>당 60원</p> <p>대금청구 금액의 2/100 (다만, 계약금액이 200만원 미만 일 경우는 제외함)</p>	

※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별표 2]

## 지역개발채권매입면제대상 (제10조 관련)

구 분	매입 면제대상과 내용	비 고
1. 매입면제 기관	<p>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달청을 경유한 계약으로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p> <p>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p> <p>다. 주한 유엔군과 외국정부 기관</p> <p>라. 주한 국제 기구와 원조 단체</p> <p>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시설</p> <p>바. 민·상법외의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p> <p>사. 「정당법」에 따른 정당</p> <p>아.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p>	
2. 매입면제 대상	<p>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를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 이전 등록</p> <p>나.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말소등록 당시의 소유자가 회수하여 신규 등록 하는 경우의 자동차 신규등록</p> <p>다. 법인 합병시의 자동차 이전등록</p> <p>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1대의 차량등록(장애인 1인1대에 한함)</p> <p>(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p> <p>(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p> <p>(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p> <p>(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p> <p>마. 각종 허가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점용·사용허가</li> <li>○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농어가 주택건설과 농림어업 목적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허가.</li> </ul> <p>다만, 농업인·어업인과 농림어업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가 정한 바에 따름.</p> <p>바. 일반운영비 또는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p> <p>사.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p> <p>아. 개별 법령 및 조례의 위탁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무</p> <p>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2012년12월31일까지 15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의무 면제</p>	<p>“자”목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p>

#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1] (제9조 관련)

##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

현 행		개정안	
매입대상	매입기준	매입대상	매입기준
<b>1. 자동차 신규등록</b>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이상 ② 1,600cc이상 ③ 2,000cc이상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cc이상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b>2. 자동차 이전등록</b> (시·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이상 ② 1,600cc이상 ③ 2,000cc이상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cc이상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등록세과표의 6/100 등록세과표의 8/100 등록세과표의 12/100 등록세과표의 3/100 등록세과표의 3/100 등록세과표의 2/100 등록세과표의 1/100 등록세과표의 1/100	<b>1. 자동차 신규등록</b>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이상 ② 1,600cc이상 ③ 2,000cc이상 나 ~ 바(현행과 같음)  <b>2. 자동차 이전등록</b>  가 ~ 바(현행과 같음)	등록세과표의 6/100 등록세과표의 6/100 등록세과표의 6/100

현 행		개정안	
매입대상	매입기준	매입대상	매입기준
<p>3. 각종 허가</p> <p>가. 도로·하천(소하천포함)·구거부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p> <p>나. 토지형질 변경허가</p> <p>① 농지 (전 ·답)</p> <p>② 산·임야, 잡종지등 기타지목</p> <p>다. 골프장 등록</p> <p>4. 건설공사도급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용역 계약,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 (지차단체가 전액출자·출연법인의 계약 체결 포함)</p>	<p>점·사용료부과액의 5/100 (점·사용 기간이 1년이상의 장기허가시는 최초 점·사용료 징수시에만 점·사용료 부과액의 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함)</p> <p>m<sup>2</sup>당 1,500원</p> <p>m<sup>2</sup>당 3,000원</p> <p>m<sup>2</sup>당 60원</p> <p>대금청구 금액의 2/100 (다만, 계약금액이 200만원 미만 일 경우는 제외함)</p>	<p>3. 각종 허가</p> <p>가 ~ 다(현행과 같음)</p> <p>4. 건설공사도급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용역 계약,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 (현행과 같음)</p>	



[별표 2]

지역개발채권매입면제대상 (제10조 관련)

구분	현행	개정안
1매입면제기관	<p>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달청을 경유한 계약으로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p> <p>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p> <p>다. 주한 유엔군과 외국정부 기관</p> <p>라. 주한 국제 기구와 원조 단체</p> <p>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시설</p> <p>바. 민·상법외의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p> <p>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p> <p>사. 「정당법」에 따른 정당</p> <p>아.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p>	<p>가. ~ 아. (현행과 같음)</p>
2매입면제대상	<p>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를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 이전 등록</p> <p>나.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말소등록 당시의 소유자가 회수하여 신규 등록 하는 경우의 자동차 신규등록</p> <p>다. 법인 합병시의 자동차 이전등록</p> <p>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1대의 차량등록(장애인 1인1대에 한함)</p> <p>(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p> <p>(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p> <p>(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p> <p>(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p> <p>마. 각종 허가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점용·사용허가</li> <li>○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농어가 주택건설과 농림어업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허가.</li> </ul> <p>다만, 농업인·어업인과 농림어업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가 정한 바에 따름.</p> <p>바. 일반운영비 또는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p> <p>사.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p> <p>아. 개별 법령 및 조례의 위탁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무</p> <p>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2012년12월31까지 15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의무 면제 (“자”목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p>	<p>가. ~ 자. (현행과 같음)</p> <p>다.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개수·건조·수선하는 경우와 대체취득하는 경우의 등록, 인·허가 (지방세법제108조에 한함) 및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 등과 동일한 자동차 등으로 교환받는 자동차의 등록 (지방세법 제268조에 한함)</p> <p>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채 매입</p>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지방공기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9조(지방채)</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지방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08조(천재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li> <li>○ 제268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등)</li> <li>○ 제10조(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li> </ul> </li> </ul>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 관련법령 발췌사항

## □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지방채)**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입을 얻은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 경상적인 운전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회전기금의 재원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건설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자금으로 필요한 때

②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신설 1992.12.8, 1996.12.30, 2004.12.30>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조례가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0>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등록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4.12.30>

## □ 지방세법

**제108조(천재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이 건조, 종류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 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1995.12.6, 1997.8.30, 2000.12.29, 2007.12.31>

1. 복구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2. 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의 변경을 하는 경우
3.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제268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등(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교환 받는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등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01.12.29, 2005.12.31, 2006.9.27, 2009.5.13>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신설 2009.5.13>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
-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중고자동차등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신설 2009.5.13>

## □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9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등)** ①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 항 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 각종허가,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이하 “도시철도공채”라 한다.)를 매입한 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공채의 매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조례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매입대상자 중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대상은 별표2와 같다.